#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04** 

제출연월일 : 2021. 3. .

제 출 자: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하남역사박물관과 향후 건립될 복수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시설 규정 및 박물관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다.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원칙)으로 개정(안 제9조)
- 라.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3장)
- 마. 박물관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장)
- 바. 박물관 추가 건립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장)
- 사. 유물의 감정규정 삭제(현행 조례 제20조 내지 제24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2. 1. ~ 2021. 2. 21.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 9. 참고사항: 덧붙임

○ 경기도내 박물관 운영 현황(유·무료 현황)

# 10. 관련부서 : 경기도 문화종무과

#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하남시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에 설립한 박물관의 명칭은 "하남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로 3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 및 사료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 3. "대관" 이란 박물관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박물관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 · 학술적인 조사 · 연구
  -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 연구
  -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 ·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사업
  - 7. 매장 문화재 조사 및 자료의 수집 연구
  -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박물관장 등) 박물관에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과 소속직 원(이하 "관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장 운영

-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하남시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 1. 1월 1일
  - 2. 설날 · 추석 당일
  -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제8조(관람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받아 전시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관을 허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 등의 행사에 대 한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그 금액 등에 대하여 협 의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 5.  $\lceil \text{장애인복지법} \rfloor$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 인
-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7.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 8.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 가족
- 9.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2.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

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 제14조(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박물관에 박물관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2.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 3. 다른 기관 및 시설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시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1. 박물관장
    - 2. 역사학계 · 고고학계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자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 2. 위촉 또는 임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대관 등

- 제17조(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8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 전시실
  - 2. 부속시설 :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그 밖에 옥내·외의 공간
- 제19조(대관허가 신청) ①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계산 징수한다.
  - 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시장 또는 박물관장이 후원 등을 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장 민간위탁

- 제21조(위탁기준 등)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위탁기준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박물관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탁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수탁자는 시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3.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공정해야 한다.
  - 4.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품의를 유지해야 한다.
  - 5. 수탁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박물관장은 지도·점검시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하다.
  - 1.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2.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3.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박물관 추가 건립 및 자문위원회

- 제25조(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외에 추가로 박물관을 설립하려면 이를 자문하기 위하여 박물관건 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관한 사항
    - 2.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박물관의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
    - 4. 박물관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 5. 유물의 수집・제작・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박물관 건립 준비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3. 하남시의회 의원
  - 4. 박물관 관련 부서 국 · 과장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 제2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관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다.
  -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⑥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구성과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16조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하남역사박물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역사박물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하남역사 박물관으로 본다.
-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하남역사박물관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서명	문화체육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팀장 직위·성명	박물관팀장 최경미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최경미 (790-5925)		

# 하남역사박물관 대관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평 일	80,000	· 평일 7일이상 대관시 20% 할인	
기획전시실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100,000	· 준비 및 철수 (22:00 이전, 전시장인 경우 20:00 이전) 비용은 대관료의 50% · 심야(22:00 이후, 전시장인 경우 20:00 이후) 철수비용은 대관료의 150%	
	기본(3시간)	40,000		
세미나실 (09:00~18:00)	추가 1시간당	15,000	·세미나실 정원 : 80명	
	1일(09:00~18:00)	100,000		

#### 관계법령 발췌서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된다.
-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박물관 · 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 4. 다른 박물관 ·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제6조의2(수중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중심의위원회(이 하 "수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 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 참고 경기도 내 박물관 운영 현황 (무료 26개소, 유료 24개소)

# ○ 무 료 [26개소]

('19. 1. 1기준)

연번	시군명	구	분	명 칭	설립일	비고
1	구리시	공립	2종	고구려대장간마을	2008.4.25	
2	남양주시	공립	1종	남양주시립박물관	2010.4.27.	
3	남양주시	공립	1종	남양주 유기농박물관	2011.09.26	
4	남양주시	공립	1종	실학박물관	2009.10.23	
5	동두천시	공립	1종	자유수호평화박물관	2002.05.20	
6	부천시	공립	1종	부천펄벅기념관	2006.09.30.	
7	성남시	공립	1종	판교박물관	2013.04.02.	
8	안산시	공립	1종	안산향토사 박물관	2005.12.16	
9	안산시	공립	1종	최용신기념관	2007. 11. 20.	
10	안성시	공립	1종	안성맞춤박물관	2002.08.01.	
11	안성시	공립	2종	안성3.1운동기념관	2001.11.17.	
12	안양시	공립	1종	김중업건축박물관	2014.3.28	
13	안양시	공립	2종	안양박물관	2014.09.22	
14	양평군	공립	1종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2007.10.26	
15	여주시	공립	2종	명성황후기념관	2000.11.17.	
16	여주시	공립	1종	여주박물관	1997.5.9	
17	연천군	공립	1종	전곡선사박물관	2011.04.25.	
18	오산시	공립	2 종	유엔군 초전기념관	2013.04.23.	
19	용인시	공립	1종	경기도박물관	1966.06.21.	
20	용인시	공립	1종	용인시박물관	2009.11.13.	
21	의왕시	공립	2종	의왕향토사료관	2007.5.31.	
22	이천시	공립	2종	이천시립박물관	2002. 5 24	
23	포천시	공립	2종	포천 역사문화관	2015. 7. 16	
24	하남시	공립	1종	하남역사박물관	2004.06.04.(기존) 2014.10.30.(신축)	
25	화성시	공립	1종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200103.01.	
26	화성시	공립	1종	화성시향토박물관	2011.05.03.	

# ○ 유 료 [24개소]

('19. 1. 1기준)

연 번	시군명	구	분	명 칭	설립일	비고
1	고양시	공립	1종	고양 어린이박물관	2016.06.07.	
2	과천시	공립	1종	과천시 추사박물관	2013.06.03	
3	광주시	공립	1종	경기도자박물관	2001.08.11.	
4	동두천시	공립	1종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2016.05.04	
5	부천시	공립	1종	부천교육박물관	2003.04.29.	
6	부천시	공립	2종	부천로보파크 전시관	2005.12.28	
7	부천시	공립	1종	부천수석박물관	2004.10.16.	
8	부천시	공립	1종	부천옹기박물관	2011.12.15.	
9	부천시	공립	1종	부천활박물관	2004.12.14.	
10	부천시	공립	1종	유럽자기박물관	2003.05.26.	
11	부천시	공립	1종	한국만화박물관	2001.10.12.	
12	수원시	공립	1종	수원박물관	2008.10.1.	
13	수원시	공립	1종	수원화성박물관	2009.4.27.	
14	수원시	공립	1종	수원광교박물관	2014.3.7	
15	안산시	공립	1종	성호기념관	2002.5.25.	
16	안산시	공립	1종	안산어촌민속박물관	2006.03.10	
17	양주시	공립	1종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2012.10.19.	
18	양평군	공립	2종	몽양기념관	2011.11.27	
19	양평군	공립	2종	세미원연꽃박물관	2009.01.02	
20	양평군	공립	1종	양평곤충박물관	2011. 11. 18.	
21	양평군	공립	1종	황순원문학관	2009.06.13	
22	여주시	공립	1종	여주시립 폰박물관	2016.04.26.	
23	용인시	공립	1종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011.09.26.	
24	이천시	공립	1종	이천세계도자센터	2001.8.10.	

<sup>\*</sup> 수원시, 부천시(현재 6개 소속 박물관 통합운영 과정중, 관람료 변동가능성 높음), 양평군 등 위 3개 시군 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들은 2,000~5,000원 징수중임.

참고로, 경기도소속 박물관·미술관은 유료운영이었으나 2017년 9월부터 무료로 전환 시립역사박물관 등은 무료, 특성화 박물관등은 유료가 많음